

## 2026년 출산·육아 우수기업 사전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공고

직장 내 아이키움 배려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「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」 수요기업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3월 9일

(재)충남경제진흥원장

### 1. 모집 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「출산·육아 우수기업」 및 「출산·육아 4+4제도 도입 기업」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함

#### □ 신청기간: 2026. 3. 9.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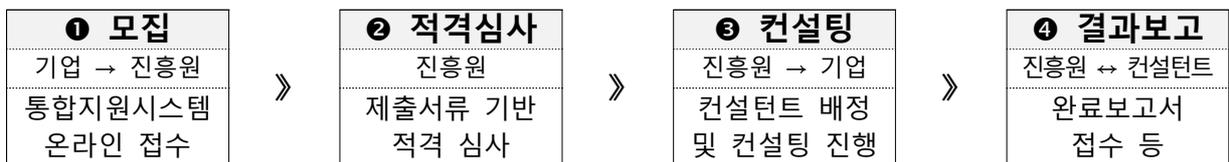
#### □ 모집규모: 50개사

#### □ 지원대상: 충남 도내 중소기업(5인 이상 ~ 300인 미만)

- 출산육아 우수기업 및 출산·육아 4+4제도 도입기업 지원사업 수요기업

#### □ 지원내용: 인사·노무 컨설팅 지원

#### □ 선정절차



## 2. 신청자격

○ 아래 조건을 충족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도내 중소기업

구분	상세내용	비고
도내 기업	충남도 소재 중소기업	사업자등록증 기준
업력	업력 2년 경과기업	사업자등록일 기준
기업규모	상시 노동자수 5인 이상 ~ 300인 미만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

### < 지원 제외 대상 >

- ▶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사업장
- ▶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 충족 시 예외)
- ▶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·단체
- ▶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(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)
- ▶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- ▶ 출산·육아 우수기업 및 출산·육아 4+4 제도 도입기업 지원사업에 기 신청한 기업은 제외

## 2. 신청기한 및 지원절차

### ① 사업공고 및 신청

- (모집규모) 50개사
- (신청기간) 2026. 3. 9.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- (신청방법) 통합지원시스템(cnsp.or.kr) 온라인 접수

### < 통합지원시스템 신청방법 >

- ① 통합지원시스템(www.cnsp.or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② 사업공고 - 중소기업지원 - 해당 사업명 클릭
- ③ 사업 신청 필요서류 확인, 제출서류 업로드 및 사업 신청

## ○ (제출서류)

- 신청 오류 발생 시, 관련 서류 전자우편 발송 및 담당자 문의 요망

※ 문의사항 ☎ 041-404-1482, ✉ cn\_fund@naver.com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신청서(서명 날인 스캔 파일)	서식 제3호
4	개인정보 수집·제공·활용 동의서	서식 제4호
5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공고일 이후 조회본
6	사업자등록증명원	공고일 이후 조회본
7	법인등기부등본	개인사업자 해당 없음

## ② 기업 선정

○ (서류검토) 기업별 적격여부 검토,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

※ 보완에 불응 또는 지정된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

○ (전문위원 배정) 기업별 신청 컨설팅 분야 확인 및 전문위원 배정

## ③ 컨설팅 진행 및 사후관리

○ (컨설팅 진행) 배정 전문위원과 컨설팅 진행

○ (사후관리) 기업 만족도 조사 및 지원사업 연계 종합 컨설팅 진행

## 4. 문 의 처

○ (담당자)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 박준규 대리(☎041-404-1482)



## 신청서 작성요령

- (1) 신청구분: 기업단위(본사 포함 전체) 또는 사업장단위(공장, 지사 등) 여부, 가능한 기업(법인) 단위 신청을 권장
- (2)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 기준으로 기입
- (3) 사업체명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명칭(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명칭)
- (4) 사업개시일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입(합병에 따른 사업승계는 그 이전 사업개시일 기입)
- (5)-①~② 대표자(직책)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주의 성명 및 직책·직위 기재
- (6) 소재지: 기업단위는 본사 주소만 기재하고, 사업장 단위는 본사 및 사업장 주소 모두 기재
- (7)-①~② 업종 및 주생산품/서비스: 신청기업의 사업종류 및 산출물 기입(다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업종 중심으로 기재)
- (8)-①~② 총자산 및 연 매출액: 해당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작성
- (9)-① 근로자수: 직전년도 말일('25.12.31.) 기준 근로자 수(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)
- (9)-②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수: 직전년도 말일('25.12.31.) 기준 전체 근로자(남녀포함) 중 유자녀 근로자 수 기재
- (10) 신청인: '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' 선정 신청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사항 기재
- (11) 신청분야: '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' 지원을 위한 인사·노무 컨설팅으로 기업 수요 컨설팅 분야 기재
- (12) 결격사유 해당 여부: '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' 선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입

